

의안번호	2215074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6.3.11.
추계번호	25D682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의2(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 등)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이버안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제3항 및 제4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6항)	재량규정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이버공격·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7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안 제5조의2(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재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현재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개정안과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비교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제9조(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함	안 제5조의2제1항(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제8조(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 -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업무를 수행	안 제5조의2제6항(국가사이버안보센터) -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 업무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현재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사업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추가·확대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